[한국표준협회 공고 제2026-003호]

2026년도 상생형 인공지능 전환(AX) 선도모델 구축지원 사업 공고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상생형 인공지능 전환(AX) 선도모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조기업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한국표준협회장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대기업이 보유한 선진 제조혁신 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지원하고, 제조 현장의 생산성 혁신을 견일 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선도모델 구축 및 확산을 도모

○ **(지원 대상)**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공정 스마트화 적용 및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 지원

- 2개 이상의 제조공정에 스마트화 적용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필수

* ❶ 데이터 수집체계, ❷ AI 모델 개발 및 적용, ❸ 시스템 통합을 필수로 적용

** ❶, ❷, ❸ 등 기업의 제조혁신과 관련된 AGV·AMR 등 물류설비, 로봇도입 및 디지털 장비 전환, 설비교체 등의 HW 및 클라우드 등 포괄적으로 지원

○ **(상생협력지원)** 주관기관인 LS일렉트릭은 중소·중견기업의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도, AI인프라 제공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및 역할(예시)
인력	기획/설계	AX전환 로드맵 수립	·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DX/AX단계별 이행 안 제시
		세계등대공장 현장 견학	· 세계등대공장 현장 견학(1회)을 제공하여 글로벌 수준의 선도적인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례 및 노하우 체감 기회 제공
		데이터 표준화 지도	· 중소기업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 하고 표준규격 적용 지도
	기술/솔루션	AX솔루션 최적화 자문	· 중소기업이 도입하려는 AI 모델, MES 등이 현장 장비와 원활히 연동되도록 기술 검증
		로봇활용 노하우 전수	· 단순 AI 도입을 넘어 제조 로봇과의 하드웨어적 결합 및 공정 자동화 최적화 노하우 전수
	구축/운영	전 과정 실질적 지도	· 구축과정, 구축 후 운영 체계까지 전과정에 대기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밀착 지도
		운영 인력 교육 (재직자 교육)	· 구축된 AX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유지보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교육
		전문 솔루션 교육 무상지원	· LS일렉트릭 정규 솔루션 교육 프로그램에 무상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진의 AX 운영 역량 강화
	성과/판로	구매 계약 연계지원	· AX전환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대기업이 우선 구매하거나 납품계약 체결 지원
		공동단가 협상	· 중소기업이 유지보수나 클라우드 이용 시 대기업의 협상력을 활용, 저렴하게 계약하도록 지원
인프라지원		AI·데이터 인프라 제공	· 클라우드, AI플랫폼,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 보유 솔루션 이용 지원, 데이터 표준 연계체계 지원 등
운영지원		유지보수 확대지원	· 시스템 구축 후 무상유지보수지원 1년과 별도로 추가적인 1년 이상 유지보수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제공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29개

○ **(지원 조건)** 총 사업비의 50%이내, 한도 15억 이내에서 지원가능

* 본 사업은 중기부에서 수행중인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동시 수행 가능

총사업비 (최대)	지원기간	정부지원한도	분담비율(%)			구축목표 수준※
			정부(최대)	주관기관	도입기업	
30억원	12개월	최대 15억원	50	10	40	중간1 이상 목표설정 필수 (기 구축수준 무관)

※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도입기업 현물) 도입기업 부담금 중 50% 인내 현물편성 가능

< 현물인정 기준 >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도입기업 인건비, 연동 기구축장비에 한하여 인정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과제 협약 후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 편성 가능
- **(도입기업 인건비)** 사업에 참여하는 도입기업 인력의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 **(연동 기구축장비)** 협약 대상의 구축 솔루션과 연동되는 기 구축 설비·전산장비, 제어장치, 스마트화기기 등에 한하여 현물 인정 가능

2. 신청기간 · 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06. 15. ~ ’26. 06. 30.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 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사업계획서 **(*첨부된 사업계획서(수정양식) 확인 후 작성)**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3~'25 또는 '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발급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추진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절차 (붙임2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기업의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 필요성,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확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협업기관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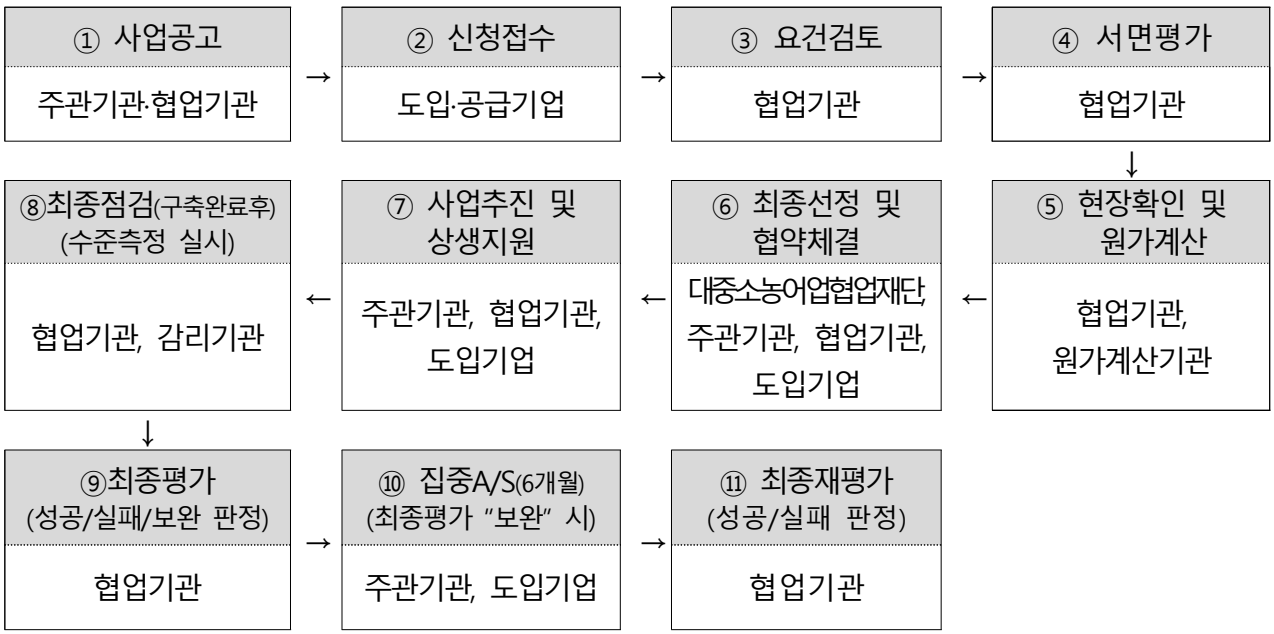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구축 목표 설정)** 반드시 2개 이상의 공정에 중간1 이상의 스마트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필수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중복신청 금지)** 동 사업 타 주관기관 중복 신청 시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원가계산비용, ②교육비 및 ③기술임치 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① 원가계산비용 : 과제 당 1,500,000원 필수 편성

② 교육비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1백만원) 필수 편성

③ 기술임치비 :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④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천원	부가세 제외
200백만원 이하	637천원	
400백만원 이하	910천원	
400백만원 초과	1,182천원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포함)

※ 주관 및 협업기관의 자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 교육인정이 가능하며, 사업 종료시 자체교육 운영결과 및 증빙 제출 필수

○ **(현물편성)** 기업부담금 중 50%이내(최대 6억원)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도입기업 인건비, 연동 기구축 장비만 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솔루션 등과 연동예정인 기구축 설비·전산장비, 제어장치, 스마트화기기 등 현물 인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❶과제책임자, ❷실무자) - 내용 :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등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
기술교육 (오프라인)	- 대상 : 도입기업(❶과제책임자, ❷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협업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 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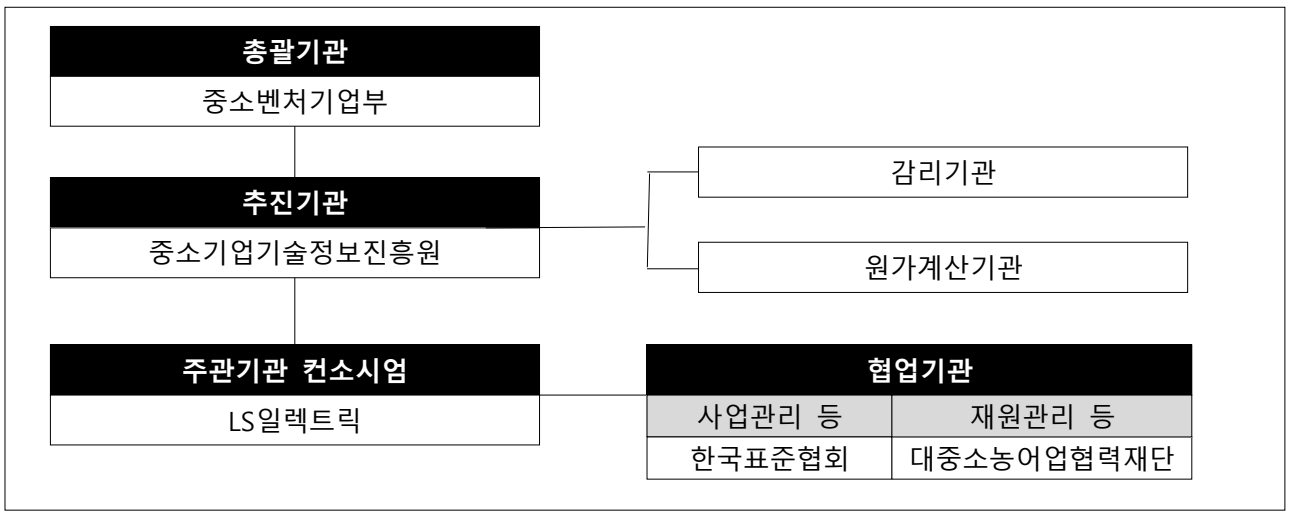

□ 담당 기관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재원관리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 정부지원금·주관기관출연금 관리, 사업성과 및 사후관리
주관기관	LS일렉트릭	- AX 선도모델 구축, 상생협력 지원, 사업운영, 전문인력 지원 등
협업기관	한국표준협회	-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
참여기업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AX 실행

6. 문의기관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사업기획 관련 문의	044-204-7257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시행 관련 문의	044-300-0954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044-998-0418
협업기관	한국표준협회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02-6240-4848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www.smart-factory.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참여제한 사업 목록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1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2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3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붙임 2 평가 지표

□ 서면 평가지표

평가 항목(안)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20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5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5
	◦ 사업수행 관련 AI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AX 선도모델을 통해 해결가능한가?	5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5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5
	◦ 기존 문제점 및 필요성 대비 공정개선 성과지표와 AX목표가 연계되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3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6
	◦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축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수집가능한가?	6
	◦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범위와 AI모델의 유형, 데이터 수집 및 처리방안 등 구축내용이 명확한가?	6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6
	◦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등 고도화 계획이 적절한가?	6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0점)	◦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5
	◦ AI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및 검증계획이 적절한가?	5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축업종, 해당 산업에 제조혁신 파급효과가 높은가?	5
상생지원의 적절성(10점)	◦ 주관기관의 상생지원 내용이 도입기업의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에 효과가 있으며, 적절한가?	10
합 계		100

※ 동점 과제는 '①구축내용 적절성, ②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③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④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붙임 3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개입 주의 안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스마트공장 부정사용 신고 → 신고유형(제3자 부당개입 의심신고)